폐교를 활용한 재가노인복지센터의 공간구성에 관한 연구

- 강원도 삼척지역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Space Composition of Welfare Center for the Old who stay at home by remodeling Closed School

-Focused on Samcheok district of Kangwon-do-

채 희 재* 임 상 규**
Chai, Hee-Jai Rim, Sang-Kyu

Abstract

The policy that do so the Geritol generation with advanced age generation's increase may be not estranged and can human down life is necessary times. The Medical treatment and welfare service is essential, and the aged support domiciliary care facility in the rudiments step more expand must. It is real condition that Kangwon-do's number of closed school appears by many things thirdly in whole country and the post management countermeasure is urgent.

Because this research chooses the closed school by way to solve the closed school problem that happen by the child of school age decrease the farming and fishing villages or small city and the shortage problem of old people's welfare facilities by population graying at the same time. There is the purpose to grope practical use the possibility of local closed school as welfare center for the old who stay at home present remodeling to welfare facilities for the old man. Keeping the structure condition of a closed school maximum, the welfare center for the old who stay at home by remodeling a closed school ultimately proposed.

키워드 : 폐교, 재가복지, 공간구성, 리모델링, 재가노인복지센터
Keywords : Closed School, Domiciliary Care, Space Composition, Remodeling, Welfare Center for the Old who stay at home

1. 序 論

1.1 연구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의 농어촌 및 중소도시 지역은 대도시로 경제활동 인구가 유출되면서 전체적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반면 상대적으로 노인인구의 비율은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농어촌지역은 학령아동이 줄어들고, 인구의 고령화는 가속화되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강원도 지역의 경우 고령화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노인인구가 급격히 늘어나 각 시·군마다 노인복지대책에 고심하고 있다. 2030년이면 10가구(家口) 중 4가구가 65세 이상 노인가구라는 통계도 나와 주목을 끌고 있다. 강원도는 이미 2006년 전체 가구의 21.5%인 11만 4,000가구가 65세 이상 고령가구로 이는 전국 평균 16.5%를 상회하고 있어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특히 고령화 속도는 다른 지역보다 빠른 편이어서 고령가구 또한 2020년 전체 가구의 27.1%(14만 9,000가구), 2030년 38.8%(20만 6,000가구)로 증가 추세가 기하급수적이다.

이와 같은 현상은 인구가 줄어드는데 비해 소가족화에 따른 일반 가구수는 늘어 상대적으로 고령가구의 비중이 커진데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현재 강원도는 27.2%인 2인 가구가 2030년에는 34.7%로 급증할 것이다.

고령가구의 증가와 함께 노인층이 소외되지 않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의료와 복지는 필수적이며, 초보 단계에 있는 고령자 지원시설도 더 확충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해 강원도의 폐교수는 전국에서 세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나 사후관리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교육의 경제적 측면만을 고려하여 일정한 지역의 커뮤니티 역할을 담당하던 지역학교가 문을 닫는 것은 문화공간의 폐쇄를 의미하기도 한다. 강원도의 폐교수는 388개로 전국 2,418개의 16%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이 가운데 도교육청이 자체 활용하거나 개인, 기관, 기업, 종교단체에 임대하고 있는 353개를 제외한 35개(9%)는 사용목적을 찾지 못해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농어촌이나 중소도시에서 학령아동 감소로 인하여 발생하는 폐교문제와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인복지 관련시설의 부족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폐교를 선정하여 지역사회의 재가노인을 위한 복지시설로의 리모델링 계획안을 제시함으로서 지역 폐교의 활용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로서 그 의의가 있다.

* 정회원, 강원대학교 공학대학 건축학과 강사, 공학박사
** 정회원, 강원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공학박사(교신저자)

1.2 연구범위 및 내용

우리나라의 의료공급체계는 주로 단기적 질병치료에 치중하고 있어 질병의 회복기나 만성질환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그래서 고도의 기술집약적 치료를 위한 서비스보다 양호(養護)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간적 보호시설이 필요하게 되었다.

또한 사회복지에 대한 전반적인 욕구의 증가와 다양화로 인하여 복지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지역사회에서의 재가복지를 위한 보호서비스에 대한 의미가 강조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복지시설의 확충과 시설기능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최근 노인환자의 증가로 노인의 의료욕구 상승과 노인성 질환의 특성에 맞추어 의료, 간호, 양호, 재활, 복지가 연계된 종합적인 복합시설 서비스가 요구되고 있다. 또한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른 간병인 문제가 야기(惹起)되고 있는데, 노인환자 부양으로 겪게 되는 가족의 고충을 지역사회내 중간보호 서비스를 통해 심리적 안정감을 도모하고, 또한 병원 입원비에 비해 중간보호시설의 비용이 저렴하기 때문에 노령화로 인한 의료비 증가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최근 일본은 장기입소 중심에서 단기입소 중심으로 서비스를 전환하고 있다.[1)]

이러한 최근의 시설경향에 맞추어 연구범위는 강원도 삼척지역을 중심으로 폐교의 현황 및 활용실태, 재가노인복지서비스에 관한 이론적 문헌조사, 노인주간보호시설 및 단기보호시설의 시설기준에 관련된 법규내용 조사 및 현재 운영되어지고 있는 노인단기보호시설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것을 바탕으로 초등학교 폐교를 선정하여 재가노인복지시설의 공간구성 및 규모계획에 관련된 건축적 시설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지금까지의 선행연구 관련문헌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1. 기존 관련 연구문헌 고찰

저자	제목	연구내용
이은희·나수연·이언구 (1997)	폐교시설을 이용한 환경친화적 노인주거단지계획	농어촌 지역주민들이 노후에 안정된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복지시설로의 노인주거단지를 제안
안종락 (2004)	폐교시설을 활용한 치매노인요양시설 건축계획	군산지역 폐교시설 중 입지조건이 양호하고 일반적 규모의 폐교를 선정하여 치매노인요양시설로 활용하는 모형을 제시함
이종선 (2007)	폐교를 활용한 유료노인복지주택 연구	도시근교형 미활용 폐교를 이용해 노인복지시설인 유료노인복지주택의 계획안을 제시함

1) 김연선, 노인환자의 중간요양시설 욕구조사 연구,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2000, p.27

2. 폐교의 시설현황 및 활용실태

2.1 강원도 폐교시설의 현황

강원도 지역의 전체 폐교수는 1982년부터 2007년까지 388개를 차지하며, 이 가운데 현재 활용중인 폐교는 203개로 전체의 52.32%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강원도의 연도별 폐교수

년 도	82~90	91~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합계
학교수	48	299	8	6	4	8	4	11	388

표 3. 강원도의 폐교 활용현황

처리 종결	처리종결 제외	부지보유 (건물철거)	현재 활용중			향후활용 및 처분계획		
			자체활용	임대	소계	임대	기타	소계
104	284	46	21	182	203	34	1	35

강원도의 지역별 폐교현황을 살펴보면 영월군 45개, 정선군, 홍천군 각각 43개, 평창군 37개, 삼척시 31개, 인제군 29개, 춘천시 28개, 횡성군 25개, 원주시 23개, 강릉시, 화천군 각각 18개, 양구군 15개, 철원군 9개, 속초시·양양군 8개, 태백시 7개, 고성군 6개, 동해시 3개 순으로 나타났다.

표 4. 강원도의 지역별 폐교현황

지 역	처리종결	부지만보유	자체활용	임대	미활용	폐교수
춘천시	10	1	0	17	0	28
원주시	9	0	1	11	2	23
강릉시	1	0	3	13	1	18
속초·양양	3	0	1	3	1	8
동해시	1	0	0	1	1	3
태백시	5	2	0	0	0	7
삼척시	4	7	1	13	6	31
홍천군	3	7	2	16	15	43
횡성군	7	1	1	13	3	25
영월군	14	1	1	27	2	45
평창군	5	9	2	20	1	37
정선군	10	12	2	19	0	43
철원군	2	1	1	4	1	9
화천군	9	0	2	7	0	18
양구군	6	1	1	5	2	15
인제군	13	2	2	12	0	29
고성군	2	2	1	1	0	6
합 계	104	46	21	182	35	388

강원도 지역 폐교의 용도별 활용현황을 살펴보면 활용중인 폐교 203개 가운데 자체활용은 21개, 임대는 182개로 나타났다. 자체활용되는 폐교와 임대형식으로 활용되는 폐교를 용도별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표 5. 강원도 지역 폐교의 용도별 자체활용 현황

용도	학생야영장	체험학습장	평생교육원	체육훈련장	사택단지	교육사료관	인근학교 특별교실	통일교육수련원	학교시설사업소	계
수량	6	7	1	2	1	1	1	1	1	21

표 6. 강원도 지역 폐교의 용도별 임대 현황

용도	교육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종교시설	사회복지시설	기업체 수련시설	생산시설	주민복지시설	기타	계
수량	39	5	3	5	10	6	85	29	182

현재 자체 활용되고 있는 폐교의 용도별 구성비는 체험학습장(33.33%)>학생야영장(28.57%)>체육훈련장(9.52%)>평생교육원·사택단지·교육사료관·인근학교 특별교실·통일교육수련원·학교시설사업소(각각 4.76%)순으로 나타났으며, 임대형식으로 활용되는 강원도 지역의 폐교를 용도별로 그 구성비를 살펴보면 주민복지시설(46.7%)>교육시설(21.43%)>기타시설(15.93%)>기업체 수련시설(5.49%)>생산시설(3.29%)>청소년수련시설(2.75%)>사회복지시설(2.75%)>종교시설(1.65%) 순으로 나타났다.

강원도에서 활용중인 폐교 203개 가운데 임대형식은 182개로 89.65%를 차지하고, 자체활용은 21개로 10.3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강원도의 전체 폐교수 388개 가운데 미활용은 35개로 9.02%, 부지만 보유하고 있는 것은 46개로 11.85%를 차지하고 있다. 전체 폐교수를 기준으로 보면 폐교의 활용율은 52.32%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강원도 지역의 경우 초등학교의 58%가 학생수 100명 이하의 소규모 학교이고, 중학교는 150명 이하 소규모 학교가 48%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소규모 학교에서는 양질(良質)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기 힘들며, 또한 농어촌 지역의 미약한 사설교육 인프라로 인하여 도시와 농촌간 교육격차는 점차 커지고 있는 현실에 처해 있다.[2)]

표 7. 강원도의 도농간 학생수별 초등학교 학교수

지역	30명이하	30~100명	101~400명	401~1,000명	1,001명이상	계	학생수
시	14(22)	40(1)	49	30	43	176(23)	91,950
군	38(62)	85(2)	48	15	4	190(64)	30,711
합계	52(84)	125(3)	97	45	47	366(87)	122,661

※ ( )는 분교수로서 전체 수에 미포함

강원도 교육청의 폐교자산 활용계획에서 임대허용 사업으로는 ①교육용, ②주민복지시설이나 농업생산시설, ③문화예술 또는 문화사업을 위한 공간, ④사회복지시설 용도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임대를 추진하고 있었으며, 임대에서 제외되는 사업은 ①위락시설이나 별장 등이와 유사한 시설, ②미풍양속을 저해하는 사업, ③환경을 오염시키는 시설 또는 사업, ④주민들에게 위화감을 줄 수 있는 시설 또는 사업, ⑤당해 주민들이 반대하는 사업, ⑥기타 투기목적 등의 사업은 근절(根絶)하고 있다.

현재 폐교활용에 있어 폐교를 개량할 경우 해당 교육청의 허가가 필요하고 시설 계약해지시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적극적인 활용이 되지 못하는 원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2.2 삼척지역 폐교시설의 활용실태

강원도 지역의 388개 폐교 가운데 삼척지역의 폐교는 31개로 전체 도내구성비의 8%를 차지하고 있다. 삼척지역의 폐교현황을 살펴보면 처리종결 4개, 부지만 보유 7개, 자체활용 1개, 미활용 6개, 임대 13개로 조사되었다.

강원도 지역의 미활용 폐교는 35개로 이 가운데 6개가 삼척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전체 도내구성비의 17.14%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미활용율이 다른 지역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삼척지역 폐교시설의 임대현황

교 명	용 도	폐교년도	폐교 원인
궁촌초 양지분교	복리시설-주민복지시설	1994	학생수 감소
근덕초 교곡분교	교육시설-삼척예총학습수련관	1999	학생수 감소
노곡초 여삼분교	기타-곤드레 건조장	1995	학생수 감소
도계초 심포분교	복리시설-마을복지회관 및 마을공동사업장	2004	통폐합
도계초 점리분교	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	2003	학생수 감소
미로초 동산분교	복리시설-마을복지회관 및 토, 목공예장	1998	통폐합
미로초 활기분교	복리시설-마을회관 및 농산물 보관창고	2000	학생수 감소
장원초 대교분교	복리시설-현장체험학습장 및 주민복지시설	2006	학생수 감소
하장초 번천분교	복리시설-마을복지회관	1999	학생수 감소
하장초 추동분교	기타-농산물저장소 및 채소육묘장	1998	통폐합
하장초 판문분교	교육시설-전통문화체험교실(청소년 수련시설)	1998	통폐합
맹방초 금계분교	생산시설-두류, 산채 등 건강식품개발원	1995	학생수 감소
도계초 동덕분교	교육시설- 한국전통목조전문학교	2007	학생수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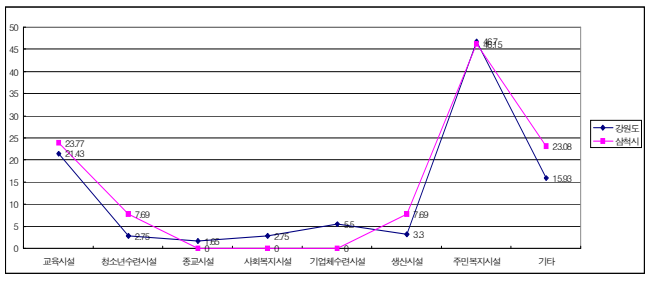

그림 1. 강원도와 삼척지역 폐교의 용도별 임대현황 구성비(%)

2) 강원도, 강원도 인적자원개발 기본계획(2006~2010), 2005. 12, p.21

폐교시설의 용도별 임대현황을 조사한 결과 강원도의 경우 폐교를 사회복지시설로 활용하는 곳은 전체의 2.75%에 불과하며, 삼척지역의 경우는 현재 사회복지시설로 활용하는 곳은 전무(全無)한 것으로 분석되었다.(그림 1)

자연환경이 양호하고 주변경관이 수려한 관계로 청소년 수련시설로 활용하고 있는 사례와 2005년까지 조경용 수목 재배 장소로 활용하다가 현재 방치된 상태로 미활용하고 있는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하장초등학교 판문분교

강원도 삼척시 하장면 판문리에 위치한 시설로 현재 청소년 수련시설(전통문화체험교실) 및 주말 휴양시설로 사용하고 있다. 2개 교실은 마루 위에 장판을 깔아 청소년 수련시설로 활용하고 있으며, 1개 교실은 조리 및 식사실로 사용하고 있다. 청소년 수련시설로의 활용은 6~8개월로 제한되기 때문에 그 이외의 시설사용은 주말 휴양지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 전부이다.

그림 2. 하장초등학교 판문분교의 활용사례

2) 호산초등학교 기곡분교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기곡리에 위치한 시설로 현재 학교는 더 이상 활용되지 않고 있었으며, 관사 및 교사 전체가 관리되지 않고 방치된 상태이다. 학교 운동장은 굴삭기로 일부분 파헤쳐진 상태이고, 학교가 더 이상 관리되지 않고 있어 황폐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교사 건물 2개동 가운데 1개동은 교육청에서 근래 들어 방수공사를 다시 실시한 상태였고, 화장실은 신축된지 얼마 되지 않았으나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매우 지저분한 상태로 방치되고 있다. 2005년까지 임대를 받은 사람이 학교를 임대받은 후 조경용 수목을 재배하기에 급급한 나머지 학교의 시설관리는 전혀 하지 않아 폐허가 되어가는 학교의 모습에 불만을 호소하는 주민들도 많이 있었으며, 임대를 받은 사람이 기존의 학교 수목을 임의로 무단 채취하였다는 제보도 있었다.

현재 학교 건물은 교사 2개동, 숙직실, 관사 2개동, 창고, 화장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화장실은 신축된지 얼마 되지 않은 것으로 보였으며, 시설의 노후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었다.

처음에는 임대목적이 자생식물연구소이었지만 실제의 목적은 조경용 수목재배이었으며, 현지 방문조사 당시에도 몇 그루의 조경용 수목이 교실에 남아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그림 3. 호산초등학교 기곡분교의 미활용사례

3. 폐교활용 재가노인복지시설의 공간구성

폐교시설은 대부분 농어촌 지역주민의 교육장소일 뿐만 아니라 지역 커뮤니티를 구성하는 중심적 공간이었기 때문에 위치적으로 지역사회와의 연계성이 좋다. 또한 대부분의 폐교는 도시근교 또는 농촌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자연경관이 우수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폐교를 노인복지시설로 활용하기 위해 지역특성에 관련된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구성비와 폐교수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그림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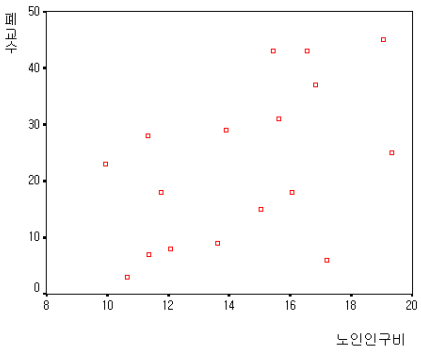

그림 4. 강원도의 지역별 노인인구비와 폐교수

강원도의 지역별 65세 이상 노인인구 구성비와 폐교수와의 상관관계를 통계적으로 분석한 결과 상관계수는 0.498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표 9)

표 9. 노인인구 구성비와 폐교수의 상관관계

구 분	노인인구	폐교수
노인인구	1	0.498*
폐교수	0.498*	1

* 상관계수는 0.05 수준(양쪽)에서 유의함 (p<0.05)

현재 폐교를 관리하는 것이 어려워 단순히 철거하는 것보다는 필요에 따라 생활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급변하는 현대사회의 변화에 적응시키며 이익이 될 수 있도록 리모델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폐교의 리모델링 방향설정에서 현재 폐교활용이 개인의 임대에 의해 행해지는 경우가 많아 활용면에서 공익성을 위해 취약한 점이 있으며, 폐교의 운영주체가 지자체 및 공익법인 등 공적자금의 의존도가 높을수록 사회교육시설, 사회복지시설, 연수시설, 문화시설 등 공공성이 높은 용도로 활용되어져야 할 것이다.

3.1 재가노인복지 서비스의 개념

지역사회보호는 영국을 포함한 유럽지역에서 사용하는 용어이며, 일본에서는 재택복지 또는 지역사회보호를 함께 사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재가복지가 집에서 생활하고 있는 요보호 대상자에게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으며, 1980년대 후반 한국의 복지정책은 본격적인 지역사회 중심의 사회복지로 전환되었고, 특히 1990년대 중반 이후에는 요보호대상의 개별적인 욕구를 위한 지역사회중심의 사회복지서비스로서 재가복지서비스[3]가 제공되기 시작하였다.

재가노인복지를 위한 지역사회보호의 광의적 의미는 가정방문서비스를 포함한 지역사회내 이용시설이나 주거보호시설에서 제공하는 제반 서비스를 포함하는 것이며, 중간적 의미는 가정봉사원을 노인가구에 파견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내 이용시설을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협의적 의미의 지역사회보호는 지역사회에 거주하고 있는 노인의 집을 방문하여 노후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노인이나 부양자에게 직접 제공하는 방문서비스(in-home service)를 의미한다.[4]

우리나라 재가복지서비스의 3대 사업은 주간보호사업, 단기보호사업, 가정봉사원파견사업 등이 있으며, 기타 재가노인의 의료생활을 담당하고 있는 지역보건소의 재가노인복지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다. 주간보호사업과 단기보호사업의 주목적은 요보호 대상자의 수용시설 입소를 예방해주거나 지연시켜 그 지역에서 계속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데 그 역할이 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노인복지법을 근거로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표 10)

표 10.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서비스 내용

구 분	사업 내용
주·야간 보호서비스	가. 생활지도 및 일상동작훈련 등 심신의 기능회복을 위한 서비스 나. 급식 및 목욕서비스 다. 노인가족에 대한 교육 및 상담
단기보호서비스	가. 급식, 치료, 그 밖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이용기간은 90일 이내로 하되, 연간 최대 이용일수는 180일로 한다.) 나. 기타 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사업에 준하는 서비스
방문요양서비스	가. 방문요양에 관한 사항 (1)신체활동지원서비스 (2)가사활동지원서비스 (3)개인활동지원서비스 (4)정서지원서비스 나. 상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1)노인생활 및 신상에 관한 상담서비스 (2)장애노인 및 보호자의 교육 다. 노인결연에 관한 사항
방문목욕서비스	입 목욕준비, 입욕시 이동보조, 몸씻기, 머리말리기, 옷 갈아입히기 등과 목욕 후 주변정리까지 포함

(※자료: 보건복지가족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0>, 2008 근거로 작성)

현재 보건소에서는 노인복지법상 재가노인복지서비스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재가노인복지서비스의 핵심서비스에 해당하는 방문의료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보건소에서 진행하고 있는 서비스 내용은 크게 방문의료와 가정생활서비스로 분류할 수 있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이 제공되는 서비스는 방문간호이며, 다음으로는 방문진료이다. 현재 일부 보건소에서는 가정생활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는 현재 재가노인복지사업 중 가정봉사원이 파견하여 실시하는 서비스 내용과 유사하여 서비스의 중복현상이 발생하므로 각 기관의 특성에 부합되는 특성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복 서비스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실제로 현재 춘천시 보건소의 경우 방문간호사는 33명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및 독거노인, 장애인 가구 등 의료취약계층 8,458가구를 돌보고 있다. 방문간호사 1명이 당뇨, 고혈압 등 만성질환자 250여 가구를 관리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인구가 많은 일부 동(洞)지역의 경우 방문간호사 1명이 최대 300가구까지 보살펴야 하는 등 문제가 발생되어 일부 서비스 대상자들은 방문간호사의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받지 못하는 등 의료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특히 면(面)지역의 경우에는 보건지소 방문간호사 1명이 서비스 대상주민을 모두 관할하고 있어 주민을 방문하려면 장시간 이동해야 하므로 정기적인 방문관리가 어려운 실정에 처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이 오랫동안 거주하고 생활해온 친근한 지역사회에서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지역사회보호를 위한 재

3) 1992년 보건사회부의「재가복지센터 운영지침」에서 '재가'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4) 곽인숙, 주거복지와 지역사회보호, 한국주거학회 학회지 제 1권 제 3호, 2007. 6, p.7

가복지이며, 이 개념은 하나의 시설 또는 근거리에 위치한 여러 개의 건물에서 주간보호, 단기보호와 장기보호가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하여 치매 환자나 일반 노인성 환자가 증상의 악화에 따라 이곳저곳 옮겨 다니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일정한 지역에 머물면서 서비스를 제공받고 연속적인 간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장기요양시설과 재가복지시설, 의료시설과 같은 연계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이 필수적이다.[5)]

관련연구를 보면 많은 노인들이 자신이 살던 집에서 노후 생활을 하고 싶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런 욕구로 인해 서구의 많은 나라에서는 1980년대 이후 노인보호에 대한 관심이 노인이 살던 기존의 주택에서 살면서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방안 마련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6)]

지방자치의 강화로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하는 재가복지서비스의 제공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으며, 특히 고령자를 위한 지역사회보호는 매우 비중이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지역사회보호를 위한 재가복지서비스의 대상은 저소득층, 극빈층으로 한정하고 있어 대다수의 일반인에게는 지역사회보호 서비스가 지원되지 않고 있으므로 보편적인 다수를 위한 서비스차원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3.2 재가노인복지시설의 공간구성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은 가정봉사원 파견센터, 재가복지봉사센터, 노인종합복지관, 사회복지관, 주간보호센터, 단기보호센터 등이 있다.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장소는 크게 노인이 생활하고 있는 집과 지역사회 내 주간보호시설, 단기보호시설이다.

집에서는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으며, 지역사회 내 주간보호시설, 단기보호시설에서 주간보호사업과 단기보호사업의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다.

재가노인복지서비스 제공시설 및 이용현황을 강원도 지역을 중심으로 시·군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표 11)

현재 65세 이상 노인인구 구성비를 강원도내 지역별로 조사해 보면 횡성군(19.33%), 영월군(19.03%), 양양군(17.38%), 고성군(17.19%), 평창군(16.81%), 홍천군(16.53%), 화천군(16.05%), 삼척시(15.62%), 정선군(15.44%), 양구군(15.02%), 인제군(13.88%), 철원군(13.62%), 강릉시(11.75%), 태백시(11.36%), 춘천시(11.32%), 동해시(10.66%), 속초시(10.29%), 원주시(9.93%) 순으로 나타나 농촌지역(郡)의 평균 노인인구구성비는 16.39%, 도시지역(市)의 평균 노인인구구성비는 11.56%로 나타나 농촌지역이 4.83%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도시지역 중에는 삼척시가 15.62%로 노인인구구성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영월군에 따르면 2008년 9월 10일 기준 65세 이상 노인인구수는 8,265명으로 군(郡) 인구의 20.6%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강원도에서 최초로 초고령사회로 진입했지만 재가노인복지시설의 현황은 가정봉사원파견시설이 1개만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11. 강원도의 지역별 재가노인복지시설 분포

지 역	가정봉사원파견시설			주간보호시설			실비주간보호시설			단기보호시설		
	시설수	정원	현원	시설수	정원	현원	시설수	정원	현원	시설수	정원	현원
춘천시	4	320	285	2	50	47	2	45	33	2	16	7
원주시	3	240	214	3	60	60	1	20	14	1	14	14
강릉시	3	240	255	1	30	25				2	16	11
속초시	2	160	158	1	20	20				1	10	9
동해시	2	160	192	1	10	10				1	10	8
삼척시	1	80	89	1	10	12						
태백시	2	160	160									
철원군												
인제군	1	80	80									
양구군												
화천군												
홍천군				1	9	9						
횡성군	1	80	79	1	10	10						
고성군	1	80	80									
양양군				1	20	13						
평창군												
정선군	1	80	12									
영월군	1	80	80									
합 계	22	1,760	1,684	11	199	186	3	65	47	6	52	35

(※자료: 보건복지가족부, 2007년 노인복지시설 현황을 근거로 작성)

일본의 경우 노인주간보호시설이 각 초등학교구에 1개소씩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서비스의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는 것으로 시설입소나 병원의 입원욕구를 상당히 억제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재가복지에 대한 인식이 적어 노인주간보호센터가 각 시·군·구에 1개소씩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는데, 대상노인의 수요에 비하면 시설공급이 상당히 부족한 편이다.

현행 노인복지법에 한정된 규격화되고 단일한 형태의 노인복지시설은 시설기준이 아닌 사회적 요구와 선호에 의해 노인요양서비스를 기준으로 <표 12>와 같이 다양하게 재구성되어져야 한다.[7)]

또한 재가보호와 시설보호의 중간단계에 해당하는 단기보호서비스를 더욱 더 확충하기 위해 지역사회 내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폐교를 재가노인복지시설인 단기보호시설로 적극적으로 리모델링하여 활용하는 것이 부족한 노인요양시설의 공급부족문제를 부분적으로 해결하고 지역시설의 활용차원에서 좋은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노인단기보호는 주간보호와 함께 가정과 시설로 양분되어오던 노인보호서비스에 다양한 대안을 제시한 것으로 이

5) 조인숙외 2인, Aging in Place를 위한 재가노인복지서비스에 관한 연구, 한국주거학회 논문집 제18권 1호, 2007.2, p.p.95~100
6) 홍형옥외 6인, 노후에는 어디에서 살까, 지식마당, 2004, p.27
7) 최민석, 일반주거지역내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통한 노인복지시설 모형개발에 관한 연구, 아주대학교 대학원, 2006.7, p.25

표 12. 서비스 연속성 측면에서 본 노인보호 서비스의 범주

구 분		생활서비스→		←의료서비스
		노인복지서비스	노인의료복지서비스	의료서비스
재택 ↓ ↑ 시설	가정서비스	가정봉사원파견	노인방문간호	왕진(往診)
	통원서비스	주간보호 (day service)	주간보호(day care) 야간보호(night care)	외래 진료
	단기서비스	단기보호 (short stay)	단기보호 (respite care)	급성질환입원
	장기서비스	양로서비스	너싱서비스(nursing)	만성질환서비스

(※자료: 권순정, 노인요양시설의 공급량추정 및 시설계획에 관한 연구, 서울대 박사논문, 1999.2, p.37)

러한 서비스는 노인으로 하여금 가능하면 독립성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가족과 함께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도록 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8)]

노인단기보호시설은 단독으로 운영되기보다는 재가복지사업의 일환으로 노인복지시설에 부설된 형태로 운영되는 것이 많다. 기존시설의 병설형태로 설립될 경우 초기투자가 많이 필요하지 않으며 최소한의 시간으로 시작할 수 있고 기타부문과의 인력연계성이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시설규모가 협소하고 일반노인과의 공동사용으로 보호시설의 노인들에게는 프라이버시가 침해되는 문제가 있다.

단독형태의 시설은 노인보호시설 이용자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공간확보가 유리하고, 시간적·심리적인 제약에서 다소 자유로울 수 있으므로 다른 형태의 공간운영방식보다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과 실내환경측면에서 바람직한 유형이라고 볼 수 있다.

재가노인복지시설 독립형은 독립된 단기보호시설이 주간보호, 가정봉사원파견사업 등의 다른 재가복지사업과 연계하여 구성되는 시설로 특성은 독립된 단기보호시설과 유사하고, 이들 재가복지사업과의 연계성 속에서 운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노인주간보호시설의 시설기준을 노인복지법에서 정한 것을 근거로 살펴보면 이용인원은 5인 이상, 시설연면적은 100㎡ 이상(5인 초과시 1인당 5㎡ 이상 거실을 확보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표 13)

표 13. 노인주간보호시설의 시설기준

실 명		사무실	거실	식당	욕실	화장실	작업 및 일상동작훈련실
이용 인원	10인 이상	1	1	1	1	1	1
	10인 미만		1	1	1		

(※자료: 보건복지가족부, 노인복지법령집, 2007, [별표 9])

노인단기보호시설은 그 시설기준이 노인의료복지시설 중 노인요양시설의 시설기준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중풍·치매 등의 노인을 주된 이용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노인전문요양시설의 시설기준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강원도 지역의 경우 <표 11>에서 단기보호시설의 경우 시설 1개당 정원은 8~10명 범위로 평균 정원이 8.6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연구에서 전국에 위치한 단기보호시설의 경우 정원은 5~30명 범위로 평균 11.3명이며,[9)] 서울시에 위치한 단기보호시설의 정원을 조사한 것을 보면 정원은 보통 15명 내외인 것으로 나타났다.[10)]

이와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단기보호노인 10명, 주간보호노인 6명일 경우 필요한 재가노인복지센터의 공간구성은 사무실(1개), 상담실(1개), 린넨실(1개), 2인용 거실(5개), 간호사실(1개), 기능훈련실(1개), 물리치료실(1개), 주간보호실(1개), 세탁실(1개), 탈의실(1개), 욕실(1개), 화장실(1개), 조리실(1개), 식당 겸 다목실(1개)이 필요한 것으로 공간을 구성하였다.

3.3 재가노인복지시설의 규모계획

노인단기보호시설과 주간보호시설을 복합(複合)한 재가노인복지시설의 규모산정을 위해 필요한 단위실의 면적을 구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표 15)

<표 15>에서 설정한 규모계획 자료를 근거로 삼척시에 소재하고 있는 초등학교 폐교를 대상으로 노인단기보호시설과 주간보호시설을 복합한 형태로 재가노인복지시설의 모델을 제시하면 <그림 6>과 같다.

표 14. 노인의료복지시설의 법적 기준

실 명		노인요양시설	노인전문요양시설	비 고
거실	합숙용	5.0 ㎡/인	6.6 ㎡/인	합숙용 거실: 정원 4인 이하 특별거실: 입소정원 5%이내
	동거용	-	-	
	독신용	-	-	
식당 및 조리실		●	●	
세면장 및 목욕실		●	●	1개이상의 보조봉, 수직 손잡이 기둥 설치할 것
오락실		●	●	
의무실		●	●	진료에 필요한 상용의약품·위생재료 또는 의료기구 갖출 것
물리치료실		●	●	
일광욕실			●	욕창예방과 치료를 위해 입소자 50인당 1개 설치할 것
화장실		●	●	

(※자료: 보건복지가족부, 노인복지법령집, 2007, [별표 9] 재구성)

시설모델로 선정된 도경초등학교의 경우 시설위치는 지리적으로 종합병원에서 자동차로 15분 정도, 종합사회복지관에서 10분 정도의 거리에 입지(立地)하고 있다.

폐교의 시설현황에서 건물현황은 교실건물이 1971년도에 철근콘크리트 슬라브 구조로 건축된 것으로 노후상태는 정상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숙직실(33㎡)은 1977년도에 교사(校舍) 후면에 벽돌조 슬라브 구조로 건축되었으며 노후상태는 정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외부공간인 운동장은 남북방향으로 90m, 동서방향으로 53m의 길이로 구성되어 있다.

8) 박성제·유영민, 노인 단기보호시설의 건축계획에 관한 연구, 한국의료복지시설학회 논문집 제 6권 10호, 2000.6, p.32

9) 박성재·유영민, 노인단기보호시설의 건축계획에 관한 연구, 한국의료복지시설학회논문집 제 6권 10호, 2000. 6, p.33

10) 김석준, 서울시 재가노인복지시설의 공급량 및 시설배치에 관한 연구, 한국의료복지시설학회 논문집 제 10권 1호, 2004. 3, p.22

시설모델로 제안한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정원은 단기보호노인 10명, 주간보호노인 6명을 기준으로 전체 이용 정원은 16명이다. 근무하는 직원은 9명으로 계획하였으나 야간 당직 의료인력을 고려하면 간호사 1명이 더 필요하다.

표 15. 재가노인복지센터의 공간구성 및 규모계획(안)

실 명	면적(㎡)	산 출 근 거
사무실	34.50	1인당 면적 5㎡기준(5㎡×7인)
상담실	5.60	1.6m×3.5m (자원봉사자실 겸용)
린넨실	5.44	각종 수납창고
2인실	31.05	4.5m×6.9m (개별욕실 및 화장실 포함)
간호사실	13.60	1인당 6㎡기준(6㎡×2인)+ 여유공간(야간 당직)
기능훈련실	34.50	기존시설 평균면적(30.25㎡)+ 통로공간
물리치료실	14.00	7.0㎡/병상 기준으로 2병상 설치
주간보호실	41.40	36㎡(6인 요양실: 6m×6m)+ 이동공간
세탁실	6.21	2.3m×2.7m
탈의실	5.40	2.0m×2.7m (탈의실을 거쳐 욕실 진입)
욕 실	12.42	4.6m×2.7m
화장실	5.76	남/녀 구분(주간보호노인 및 직원용)
조리실	10.80	식당 면적의 20% 정도
식당 겸 다목적실	47.61	1인당 면적 2.5㎡기준(2.5㎡×16인)+ 여유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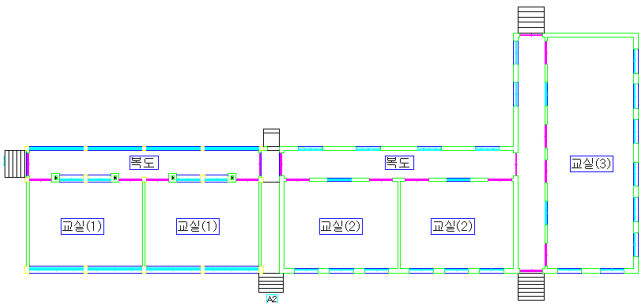

그림 5. 초등학교 폐교의 교사평면도 현황

노인단기보호시설의 거실 인원은 2인실을 기준으로 계획하였으며, 주간보호시설의 주간보호실은 병상(病床) 배치를 고려한 요양실을 기준으로 계획하여 경우에 따라서는 단기보호시설의 다인실(多人室)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야간에는 단기보호시설의 보호노인을 위해 야간 당직 간호사가 근무할 수 있는 간호사실을 별도로 구성하여 당직실로 이용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그림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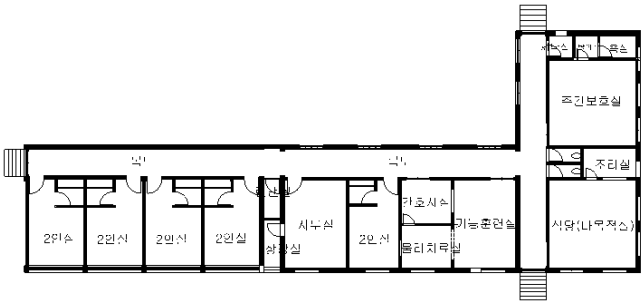

그림 6. 재가노인복지센터로의 폐교 리모델링 평면계획(안)

4. 結 論

우리나라의 농어촌이나 중소도시에서 학령아동 감소로 인하여 발생하는 폐교문제와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인복지 관련 재가복지시설의 부족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폐교를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지역분포를 강원도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주간보호시설은 도시지역(市)이 85.72%, 농촌지역(郡)이 27.27% 설치되어 있었으며, 단기보호시설은 도시지역(市)이 71.43%, 농촌지역(郡)이 0%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농촌지역에 대한 재가복지서비스가 도시지역에 비해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노인단기보호시설의 평균 정원은 강원도의 경우 시설 1개당 평균 8.67명으로 나타나 전국 평균인 11.3명과 비교해 다소 낮게 나타났다.

셋째, 재가노인복지센터의 이용정원을 단기보호노인 10명, 주간보호노인 6명으로 설정하여 재가노인복지시설 독립형으로 계획하였을 경우 법적인 시설기준을 고려하면 사무실, 상담실, 린넨실, 간호사실, 기능훈련실, 물리치료실, 주간보호실(6인용), 세탁실, 탈의실, 욕실, 화장실, 조리실, 식당 겸 다목적실이 각각 1개, 단기보호를 위한 거실(2인용)이 5개가 필요한 것으로 구성하였다.

넷째, 도시근교에 위치한 초등학교 폐교의 교사(校舍)를 선정하여 단기보호시설과 주간보호시설이 복합된 독립형 재가노인복지시설의 공간구성에 관련된 리모델링 계획안을 제시하였으나 교사(校舍) 이외 시설인 숙직실은 지역거주 노인들의 경로당으로 활용하고 운동장은 게이트볼장과 치유농원으로 구성하여 노인들 상호간의 사회적 교류가 가능하도록 활용한다.

참 고 문 헌

1. 곽인숙, 주거복지와 사회복지, 한국주거학회 학회지, 2007. 6
2. 권순정, 한국 노인요양시설의 공급량 추정 및 건축계획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1999. 2
3. 김석준, 서울시 재가노인복지시설의 공급량 및 시설배치에 관한 연구, 한국의료복지시설학회 논문집 제 10권 1호, 2004. 3
4. 김태일, 고령자 복지시설 확보를 위한 지역시설 활용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제 13권 4호, 1997. 4
5. 문창호·안종락, 폐교의 리모델링을 통한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 건축제안, 한국주거학회 제16권 5호, 2005.10
6. 박성제·유영민, 노인단기보호시설의 건축계획에 관한 연구, 한국의료복지시설학회, 제 6권 10호, 2000. 6
7. 이종선, 폐교를 활용한 유료노인복지주택에 관한 연구, 공주대 대학원 석사논문, 2007 .2
8. 조인숙·박남희·신화경, Aging in Place를 위한 재가노인복지서비스에 관한 연구, 한국주거학회 논문집, 제 18권 1호, 2007.2
9 최상호,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노인복지시설의 이용자선호도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 도시과학대학원, 2005. 8
10. 日本建築學會 編, 地域施設の計劃, 日本: 丸善株式會社, 1997

(接受 : 2008.10.09)